

제2995호
2023. 4.28.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 홍 보 담 담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공 고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23-425호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2
 제2023-428호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2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3년 1월 1일
-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m²
- 다. 개별토지 필지수 : 33,182필지

2. 공시사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역 생략)

3. 필지별 자가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23. 4. 28. ~ 5. 29.

나. 장소

- 중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4. 이의신청 안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결정·공시일로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5.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그 처리결과를 2023년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6. 기타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3396-59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28호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3. 1. 1. 기준

나. 개별주택수 : 4,860호

(단독주택 2,208호, 다가구 797호, 다중 7호, 주상용 1,698호, 기타 150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에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863,981호

(아파트 12,057,979호, 연립 531,423호, 다세대 2,274,57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3.4.28.~2023.5.30.).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3.3.23.~2023.4.11.)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